

# 낙태(落胎)에 대한 원불교 입장

## 목 차

<b>낙태에 대한 원불고 입장</b> .....	<b>19면</b>
<b>1. 낙태란 무엇입니까 ?</b> .....	<b>19면</b>
<b>2. 교리상에서 본 태아의 시기(始期)는 언제입니까 ?</b> .....	<b>19면</b>
<b>3. 현행 법적으로는 태아의 시기를 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b> .....	<b>20면</b>
<b>4. 타 종교의 낙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b> .....	<b>20면</b>
<b>5. 현행 법적으로는 낙태에 대한 규정은 어떠합니까 ?</b> .....	<b>21면</b>
<b>6. 낙태죄에 대해 처벌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b> .....	<b>21면</b>
<b>7.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는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b> .....	<b>21면</b>
<b>8. 낙태가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b> .....	<b>22면</b>
<b>9. 낙태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도 성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b> .....	<b>23면</b>
<b>10. 현재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낙태는 어느 경우입니까 ? (모자보건법)</b> .....	<b>24면</b>
<b>11. 낙태를 합법화(모자보건법)하는 법적규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b> .....	<b>25면</b>
<b>12. 혹 불가분하게 낙태를 허용한다면(모자보건법)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 ?</b> .....	<b>26면</b>
<b>13. 낙태에 대한 예방및 대응 방법은 ?</b> .....	<b>27면</b>
<b>14. 낙태에 대한 견해 (에타원님)</b> .....	<b>28면</b>

## 낙태에 대한 원불교 입장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이며 사은(四恩)에 배은으로써 영생을 통하여 악연을 맷고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되는 죄악입니다. .

- 1)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각자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생명도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생명을 서로 존중해 주고 보호해 줌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초목 금수도 연고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태아도 생명이므로 그 생명을 보장 받을 절대적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벳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의에 의해 생명권을 박탈해서는 않됩니다. 낙태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2)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비춰 볼때 낙태는 진리에 대한 위반이며 사은에 대한 배은이며 영생을 통하여 악연을 맷고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되는 죄악입니다.
- 3) 그러므로 인류는 정신개벽을 통하여 현대 물질문명으로 야기된 비인간화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실상과 존엄을 깨닫는 지혜를 갖추고 건전한 성윤리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전 생령의 생명보호에 적극 동참 하므로써 낙태가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 1. 낙태란 무엇입니까 ?

낙태는 태종에 있는 태아를 모체안에서 살해하거나 인위적인 수단에 의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 시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 2. 교리상에서 본 태아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대종사께서 “세상의 유정 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 갈 따름이다. … 우주만유가 다같이 생멸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없는 생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만유가 영과 기와 질로써 구성되어 있나니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며, 질은 만유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원불교 교리상에서 본 태아의 시기는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 모체안에서 수정이 될때 기와 질 (혹은 영까지)이 합해지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합해지는 시기 즉 수정될 때 부터를 태아의 생명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수정된 수정체 가운데서 착상에 이르는 비율이 50% 내외라 하더라도 특정인격체로 발육하기 위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생명의 존중의 입장에서는 50%의 착상 가능성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태아의 생명의 시기를 수정된 때부터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3. 현행 법적으로는 태아의 시기(始期)를 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

1985년 대법원 판례에서 “인간의 생명은 임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라 판시한 것을 비추어보면 태아의 시기는 수정된 순간부터 보고 있습니다.

### 4. 타 종교의 낙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독교에서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 하여 낙태를 금하고 있으며 특히 천주교에서는 낙태는 곧 살인이라하여 강력히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 교회안 제재법 제 1398조를 보면 “낙태를 행한 당사자나 낙태를 행하여 그 효과를 얻은자는 자동처벌, 파문제재를 받

아 신자 자격까지도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5. 현행법적으로는 낙태에 대한 규정은 어떠합니까 ?

형법 제 269조, 제 270조에 의해 낙태는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형법 제 269조, 제 270조

第269條 (落胎) ①婦女가 藥物其他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4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婦女의 嘴託 또는 承諾을 받아 落胎하게 한 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 前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致傷 한 때에는 3년以下의 懲役에 처한다. 致死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70條 (醫師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①醫師, 漢醫師, 助産員,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嘴託또는 承諾을 받아 落胎하게 한 때에는 2년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婦女의 嘴託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에게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 前 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致傷한 때에는 5년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致死한 때에는 10년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 前 3項의 境遇에는 7년以下의 資格停止를 併科한다.

## 6. 낙태죄에 대해 처벌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

물론 형법상으로는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처벌은 거의 없는(1988년: 구속: 0명, 기소: 6명) 실정입니다.

## 7.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는 1년에 약150만건의 낙태수술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출

생이 60만명 인데 비하면 약 2.5배에 달합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3천명, 약 2초에 1명씩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미국 150만건(1985년), 일본 약 50만건(1987년), 프랑스 약 17만건(1987년), 서독 약 3만6천건(1984년), 스웨덴 약 3만건(1984년)을 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인구비율로 보면 낙태가 세계 1위로서 낙태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있습니다.

## 8. 낙태가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낙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혼란할 겁니다.

### 낙태는

#### 1) 첫째 : 사회폭력을 유발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살려고 노력하고 죽음을 두려워 합니다. 비록 작지만 태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음에 있던 영이 인연을 통해서 태종으로 들어가는데 태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인연을 끊게(낙태)함은 그 영식에 원한의 인(因)을 심게하여 그 원한이 없어지지 않고 다른 연(緣)을 만나 세상에 나오게 되면 원초적으로 그 부모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폭력을 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 2) 둘째 :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됩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낙태를 간단히 “지우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여 낙태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존중과 인륜중시의 전통가치관이 상실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됩니다.

#### 3) 세째 : 성(性) 문란의 풍조를 조장합니다.

남녀간의 성(性)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한순간 절제할 줄 모르는 충동으로, 남녀가 서로 좋아 한나는 감정만으로 쉽게 성을 남발하여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책임감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쉽게 낙태라는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 결국 성에 대한 문란풍조를 가져옵니다.

#### 4) 네째 : 미혼여성의 낙태가 급증합니다.

산업화 서구화에 따른 성 개방풍조의 확산으로 미혼 여성의 낙태가 급증 현재 시술되고 있는 낙태의 43% 정도가 24세 이하의 여성들에게 행해지고 있고 28.7%가 혼전임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5) 다섯째 : 인간의 이기심을 조장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생명을 죽여서라도 자신만 편해 지려는 이기심, “돈이 최고다” “무조건 즐기고 보자”는 등 물질만능주의가 사회 곳곳에 파고 들어 인간의 이기심을 조장하게 됩니다.

#### 6) 여섯째 : 성별의 구성비에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앞으로 2010년에는 결혼적령기의 남·녀구성비가 125.8:100으로 남자 비율이 훨씬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 7) 일곱째 : 법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합니다.

형법에 낙태가 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으나 현재 낙태로 인한 처벌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법 자체가 사문화되어 법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 9. 낙태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도 성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인간의 무지 때문입니다.

낙태가 생명을 죽이는 중죄이며 인과적으로 무서운 과보를 면하지 못하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낙태로 인하여 임신부가 정신과 육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 2)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편리 때문입니다. 즉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하고, 또 임신을 했을 경우 직장으로부터 사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사회, 경제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태아의 권리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개인적 이기심의 만연으로 낙태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 3) 남아 선호사상 때문입니다.

동양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남아 선호사상으로 남자를 놓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많은 생명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융포막 세포검사 등 첨단의 과학기술이 도입되어 성별에 악용되어 여아에 대한 선별적 낙태수술이 성행 되고 있습니다.

### 4) 의사들의 비도덕적인 낙태 수술 때문입니다.

낙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부인과 병원의 주 수입이 되고 있다. 때문에 낙태수술은 빠르고 손쉬우며 그만큼 돈벌이가 되는 수술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의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낙태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 5) 사회 전반적인 국민의식 때문입니다.

기혼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생각, 특히 임신을 했을 경우 직장으로부터 사임의 압력을 받는 분위기, 또한 미혼모와 사생아에 대한 편견이 심할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낙태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 6) 정부의 낙태에 대한 방관적 태도 때문입니다.

정부과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62년도부터 벌인 가족계획 사업과정에서 인구억제 정책으로 법률적으로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낙태에 대한 처벌사항을 관대히 다루고 있으며 특히 1973년에 통과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낙태가 어느정도 합법화 되면서 법률적으로 처벌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낙태의 죄는 거의 사문화 되어 버렸습니다.

## 10. 현재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낙태는 어느 경우

## 입니까?(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 2조 5호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정의를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하며 이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계를 동법 14조 규정에 의해 인공수술을 받는 사람과 인공수술을 행한 사람은 형법 제 269조 1항·제 2항 및 동법 제 270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낙태를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 \* 모자보건법 제 14조

제 14조(人工妊娠中絕手術의 許容限界) ①醫師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本人과 배우자(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同意를 얻어 人工妊娠中絕手術을 할 수 있다.

1.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 障碍나 身體疾患이 있는 경우
  2.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傳染性 疾患이 있는 경우
  3. 强姦 또는 準強姦에 의해서 妊娠된 경우
  4. 法律上 婚姻할 수 없는 血族 또는 姻戚間에 妊娠된 경우
  5. 妊娠의 지속이 保健醫學의 이유로 母體의 健康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第 1項의 경우에 配偶者の 死亡·失踪·行方不明·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同意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本人의 同意만으로 그 手術을 행할 수 있다.
- ③ 第 1項의 경우에 本人 또는 配偶者가 心身障礙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때는 그 親權者 또는 後見人の 同意로,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때에는 扶養義務者의 同意로 각각 그 同意에 갈음할 수 있다.

## 11. 낙태를 합법화(모자보건법)하는 법적규정의 문제점

## 은 무엇입니까 ?

현행 법적으로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자보건법을 빌미로 낙태가 사회 전반적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약 150만건의 낙태가 성행되고 있는데 이중 실제 모자보건법이 허용되는 경우는 약 1만건에 불과 합니다.

### 1) 우생학적 적용사유의 문제점

모자보건법상에 나타난 우생학적 적용사유를 보면 부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인하여 태아가 출생할 경우 사산이나 놓아의 중세가 나타날 정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성행하고 있는 낙태는 태아를 위한 낙태보다는 건강이 훼손된 태아를 낳았을 경우 부녀가 받게되는 심리적 영향을 더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생학적 적용사유의 판단이 시술의사의 전문지식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이에 다른 의사들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고 개인적 판단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이며, 또한 우생학적 적용사유의 허용시점을 임신후 28주(7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2) 윤리적 적용사유의 문제점

윤리적 적용사유는 위법하게 강제된 임신으로부터 임부를 구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된 사유인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은 전혀 무시하고 나타나 있는 현실만 고려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3) 의학적 적용사유의 문제점

보건의학적 적용사유는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할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사유인데 이는 임부의 “건강”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를 빌미로 많은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12. 혹 불가분하게 낙태를 허용한다면 (모자보건법) 어

## **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 입니까?**

- 1)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출생했을 경우  
사산이나 농아등이 태어날 수 있을 경우
  - 2) 윤리적 적용사유는 임부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
  - 3) 의학적 적용사유는 임신중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모체의 건강이  
생명에 위험을 줄 경우
- \* 어느 경우든 허용시점의 기한은 임신후 3개월 미만일 때

## **13. 낙태에 대한 예방및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낙태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낙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태는 현실적으로 『필요악』으로 존재 하는 한 낙태를 완전히 없앨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어떻게하면 「원하지 않은 임신」의 발생을 줄여나가느냐 하는 예방및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1) 생명존중과 성 교육에 대한 가정, 학교,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

가정과 학교에서 등한시 되어온 인간성 함양과 생명존중의 교육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꺼려왔던 성에 대한 조기교육을 정부와 사회단체 그리고 종교계등이 합력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낙태로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계획의 방법을 낙태로 해결하려 하지말고 피임교육의 활성화와 피임기구의 다양성, 안정성을 높여서 성지식부족으로 인한 낙태를 줄이고 피임실천을 더욱더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 **2) 미혼모 · 사생아 · 기혼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

미혼모 사생아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전환시키고 법, 제도적 지원체제를 잘 갖추어 이들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혼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남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공동 문제임을

인식하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3) 입양 상담, 미혼모의 집 운영

#### 4) 낙태아를 위한 공원묘지 설치

낙태아를 위한 공원묘지를 설립하여 낙태된 태아의 안식과 천도를 빌어주며, 낙태를 경험 했거나 낙태아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나 참회기도할 수 있도록 범당을 마련 해 주어야 합니다.

## 14. 낙태에 대한 견해 (예타원님)

낙태가 두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자연유산은 어쩔수 없이 당하는 일이어서 부모의 허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나 이 경우라도 천도는 반드시 시켜주어야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영가가 새몸을 받기 위해 탁태될 때에 정에 끌려서 될 경우도 있고 스스로 선택해서 갈 경우도 있다고 하셨다. 애정으로 가기 때문에 부모연이지만 딸은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고,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가기 때문에 딸은 아버지 인연이고 아들은 어머니 인연이라고 하였다.

영식이 제 몸을 받기 위해 태중을 찾아 들어간 것이기에 유산으로 인해 설사 그 몸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그 몸과 그 인연에 대해 쉽게 잊어버리고 떠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장자(長子)를 유산했으면 장자대우를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뿐만 아니라 짧은 인연이라는 것과 영생이 있음을 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해시켜 섭섭함을 품지 않고 떠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공유산의 경우는 절대 삼가해야 한다. 설사 태중에서 영식이갓 어리기 시작할 때 이더라도 이미 한 생명은 시작이 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생명이 태동한다는 것이요, 사랑스러운 자식이 생긴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흘러가는 물도 함부로 쓰지 말라 하시고 무정한 나무나 풀 한포기도 함부로 꺽지 말라 하시었다.

그런데 하물며 고귀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끊어 버리고 소중한 자식을 부모가 죽이는 것이다. 그것은 엄연한 살인이고, 도덕적으로나 부모자녀의 천륜으로나 사회적 윤리로 보아 도저히 허락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인과적으로도 간단히 풀기 어려운 큰 악연을 짓는 것이 된다. 그러기에 미리 생명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일단 생겼을 때는 낳아 길러야 한다. 가족계획을 위해서 또는 사생아의 경우라 해도 낳아서 기르는 수고와 떳떳치 못한것이 음계를 통해 오는 마장을 당하는 것 보다 오히려 수월한 것이다. 기쁘게 낳아서 사랑으로 보살피고 길러주는 부모보다 아무리 어리석다해도 자기를 죽인 부모를 좋아할 영가는 없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맴돌면서 앙갚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로서, 사랑의 자비화신인 어머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할 수도 없고 양육할 수도 없으며 축복조차 받지 못하는 생명을 무책임하게 잉태하고서는 저주하고 마침내는 살해한다면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인공유산은 절대 삼가해야 하고 만일 만에 하나라도 혹 이 진리를 모르고 유산시킨 일이 있으면 깊은 참회와 사죄로써 영가를 위로하고 반드시 법으로 특별천도재를 해주어야 한다. 정성으로 천도하되 아울러 영가의 뜻으로 복을 지어 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먹이고 가르치며 드려야 할 정신적인 공과 경제적 소요액을 대강 계산해서 영가를 위해 공중에 베풀어주면 유산된 영가는 자기 뜻으로 알고 흐뭇하게 여길 것이다.

적어도 이렇게라도 해서 자식으로 온 인연을 후송하는 정성을 표해야 함이 진리적으로 마땅하다.

